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8 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 박범계·김남국·김용민

김종민 • 박주민 • 백혜련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기소중지결정이 된"을 각각 "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된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(생 략)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	②
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	
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	
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	
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	
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	
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	
로 한다.	<u>.</u>
1. 소재를 알 수 없어 <u>기소중</u>	1 <u>기소중지</u>
<u>지결정이 된</u> 사람 또는 도주	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된
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	
진행이 어려운 사람: 3개월	
이내	
2. <u>기소중지결정이 된</u> 경우로	2.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
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	의자중지)된
이 발부된 사람: 영장 유효기	
간 이내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